

메리츠 다이렉트 (인터넷) 업무용 자동차보험





메리츠 디렉트 고객센터

1522-1133

법인 전용 1522-1137

사고접수센터

1566-4982

meritz 메리츠화재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 제공한 경우 이용 ·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

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화 : 02-708-1000, 홈페이지 : <http://www.allcredit.co.kr>

- NICE평가정보(주)

– 전화 : 02-1588-2486, 홈페이지 : <http://www.credit.co.kr>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거래종료일은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조사·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3)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담당자 : 02-3786-255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금융민원센터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 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마. 그 밖에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단, 금융지주회사감동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 ⑤ 그룹사간 개인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개인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⑧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개인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임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개인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 3. 31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화재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증권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대체투자운용	고객정보관리인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1. 계약자 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발생 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운전자연령한정/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위반

- 운전자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연령특약의 해당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또한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운전자한정특약의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 해당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1.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 · 약물운전 /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 I	대인 II	의무보험	의무초과
음주	한도 내 지급보험금	1억원	한도 내 지급보험금	5천만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 약물운전				

2. 보험금의 분담

-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보험회사의 대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3. 보험기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4.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및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신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한 사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2)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4)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제외하고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5. 보험금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으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6.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 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 용어 해설

1. 보험 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동차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5. 피보험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

6. 보험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 1) 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 2) 부가보험료 : 수수료, 인건비, 기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7. 보험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 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

10. 면책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나, 특정의 사안은 예외로 하여 그 의무를 면함

11.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12. 공제계약

일정한 지역이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호부금을 각출해 두었다
가 조합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공
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이 있음.



메리츠다이렉트(인터넷) 업무용자동차보험

2022-07-28

메리츠다이렉트(인터넷)업무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리츠다이렉트(인터넷)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6
제1장 배상책임	6
제1절 대인배상 I	6
제3조 보상하는 손해	6
제4조 피보험자	6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6
제6조 보상하는 손해	6
제7조 피보험자	6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8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8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8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8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9
제1절 자기신체사고	9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9
제13조 피보험자	9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9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0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1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11
제18조 피보험자	11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1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2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12
제22조 피보험자	13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3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5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5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5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5
제27조 제출 서류	16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7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7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7
제31조 제출 서류	18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19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19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19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 · 대행	20
제37조 공탁금의 대출	20
제4편 일반사항	21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1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21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1
제40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2
제41조 청약의 철회	22
제42조 보험기간	23
제43조 사고발생지역	23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3
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3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23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24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5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25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25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25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26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26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26
제52조2 위법계약의 해지	27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27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28
제4장 그 밖의 사항	30
제55조 약관의 해석	30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30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30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30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30
제60조 분쟁의 조정	30
제61조 관할법원	31
제62조 준용규정	31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32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44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47
〈별표 4〉 과실상계 등	48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9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50

[메리츠다이렉트(인터넷)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법정 정월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증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 (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해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택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

반의류는 제외)

(*2)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물체 :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18. 차종 :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구분을 말합니다.

19. 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0. 과실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1. 중대한 과실 :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현저히 결여한 때를 말합니다.

22.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3. 상해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4.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5. 전기자동차 :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서 이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6.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7.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 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8. 마약·약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

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 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1-1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1-2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 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boxed{\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간접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하며, 이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② 제1항의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⑤ 다만, 제4항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약관에 기재된 공제액이 없는 경우로 피보험자의 단독사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있는 사고 시에만 지급됩니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다만, 기명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2-2-2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

는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2-2-3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 (*)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

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	---	----	---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준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가 아닌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이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보험회사는 먼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먼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자기 부담금 차액	=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 부담금	-	실제 손해액에서 해당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
-----------------	---	---------------------------	---	--

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⑧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②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 실확인원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 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 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거절할 수 있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들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 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

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4-1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

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4-2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실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은)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 서 공제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3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

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해제〉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향해 계약효력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이며, 해제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적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

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加害者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증목, 보장증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p> <p>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p>
3. 상실 수익액	<p>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times (\text{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p> <p>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p> <p>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p> <p>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p> <p>③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p>

항목	지급 기준
	<p>[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p> <p>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times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times 노무기여율 \times 투자비율$</p>
3. 상실 수익액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p> <p>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p> <p>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p> <p>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p> <p>5.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p> <p>6. 기준경비율 :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p> <p>7. 단순경비율 : 매출 대비 경비를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 수입액에 곱하는 적용률</p>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용어풀이〉</p> <p>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p> <p>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times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 수익액	<p>[소득세법]</p> <p>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p> <p>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세제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용어풀이〉</p> <p>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p> <p>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항목	지급 기준
	<p>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p> <p>(나)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p> <p>(가) 유직자</p> <p>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p> <p>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용어풀이〉</p> <p>「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div>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 수익액	<p>[통계법]</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 수익액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함 ↳〈산식〉</p> <p>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div> <p style="margin-top: 10px;">$i = 5/12\%$, $n =$취업가능월수</p>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2022년 12 월 31일 이 전 사고에 적용)	<p>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1. 적극손해 (2023년 1 월 1일 이 후 사고에 적용)	<p>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 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 <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 <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 <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p>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p>〈용어풀이〉</p>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p>〈산식〉</p>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p>(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p> <p>(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기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 취업기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p>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p>(1) 유직자</p>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p>(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p> <p>(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p> <p>(2) 가사종사자</p> <p>(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용어풀이〉</p> <p>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p>(3) 무직자</p> <p>(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용어풀이〉</p> <p>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p> <p>(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항목		지급 기준	
4. 간병비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노동능력상실률</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 이상 50%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4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5% 이상 45%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7% 이상 35%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27%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6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0%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 이상 14%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상 9%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8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 초과 5%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 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style="margin-left: 20px;">—〈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text{월평균현실소득액}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text{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 \times \text{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div>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 수익액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사망한 경우와 동일</p>
3. 가정 간호비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항목	지급 기준
3. 가정 간호비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p> <p>(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p> <p>(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p> <p>(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p>(*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p> <p>(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항목	지급 기준
2. 교환가액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p> <p>(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차료	<p>가. 대상</p> <p>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p> <p>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p> <p>(*)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의 (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p> <p>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p> <p>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항목	지급 기준
3. 대차료	<p>(*)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5,3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3,3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2,700만원
7급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7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1,2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470만원	93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8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30만원	67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27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 에 적용)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1. 과실상계 (2023년 1월 1 일 이후 사고 에 적용)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항목	지급 기준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u>스탠트그라프트</u>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주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5백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주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2급	1천5백 만원	<p>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p> <p>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3급	1천2백 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3. 단안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p> <p>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p> <p>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p> <p>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p> <p>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p> <p>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4급	1천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4급	1천만원	<p>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p> <p>8. 상완골 경부 골절</p> <p>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p> <p>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p> <p>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자이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p> <p>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창, 고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5급	900 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추체 골절</p> <p>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상완골 간부 골절</p> <p>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5급	900 만원	<p>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요골 경상돌기 골절</p> <p>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p> <p>11. 수근 주상골 골절</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p> <p>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20. 슬개골 골절</p> <p>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p> <p>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p> <p>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p> <p>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2. 23지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6급	700 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4. 심장 타박</p> <p>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 한 경우에 한한다)</p> <p>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삼관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6급	700 만원	<p>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p> <p>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p> <p>18. 요골 경부 골절</p> <p>19. 척골 주두부 골절</p> <p>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p> <p>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p> <p>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p> <p>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차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500 만원	<p>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개골 골절</p> <p>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쇠골 골절</p> <p>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p> <p>7. 견봉 쇠골인대 및 오구 쇠골인대 완전 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7급	500 만원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증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차 이상 18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8급	300 만원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 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 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 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 내용
12급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칭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공통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두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술액낭증,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12점, 경도는 13~15점을 말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흉·복부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총족 시 인정한다.	
척추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주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상·하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영역	내용
상 · 하 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상 지 부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 지 부 · 하 지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영역	내용
상 · 하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측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측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측관절을 말한다.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반신불수가 된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천 5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백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5급	9천 만원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천 500만 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천 500 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8급	4천 500 만원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p>
9급	3천 800 만원	<p>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p> <p>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p> <p>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p> <p>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p> <p>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p> <p>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10급	2천 700 만원	<p>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p> <p>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p> <p>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10급	2천 700 만원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천 300만 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 900 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 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 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13급	1천 500 만원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 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들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메리츠다이렉트(인터넷)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71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1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1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72
1-4)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3
1-5)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74
1-6)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II	75
1-7) 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5
1-8) 운전자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6
1-9)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7
1-10)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8
1-11)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9
1-12)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80
1-13)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80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81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81
2-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82
2-3)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83
2-4)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86
2-5)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87
2-6)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89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90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90
3-2)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91
3-3) 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92
3-4) 스쿨존 내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93
3-5) 유산위험 사고 보상 특별약관	94
3-6) 여성중대사고 보상 특별약관	96
3-7) 출퇴근 사고 보상 특별약관	97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98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98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100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101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101
5-2)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102
5-3)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103
5-4)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105
5-5)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105
5-6)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6
5-7)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07
5-8) 도난 부담보 특별약관	108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108
6-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08
6-2) 행복나눔 할인 특별약관Ⅱ	109
6-3)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11
7. 기타 특별약관	113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13
7-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119
7-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21
7-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24
7-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125
7-6)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126
7-7) 블랙박스 장치 특별약관	127
7-8)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별약관	129
7-9) 주행거리 연동 할인Ⅰ 특별약관	130
7-10)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33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4)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해당 법인(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5)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중 가입한 담보에 한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가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 ②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2) 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가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 감사와 직원을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가족'을 말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대리운전업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 ② 기명피보험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대리운전업자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6) 임시운전자 특별약관II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임시운전 책임기간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임시운전 책임기간(임의기간)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기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남)을 「임의기간」이라 하여 임시운전 책임기간으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1-8) 운전자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 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4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1-9)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 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10)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11)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5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 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5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3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12)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3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3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3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4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13)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 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악용하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또는 운전기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위 '3.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함)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잠금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 0|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을 죽게 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7호와 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1급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3급	400만원	600만원	3,000만원
4~7급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3)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용어풀이〉

1.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 (1) 신호위반, 지시위반 사고
- (2) 중앙선침범사고
- (3) 속도위반사고
- (4) 추월방법위반사고
-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 (6) 횡단보도사고
- (7) 무면허사고
- (8) 주취/약물복용사고
- (9) 인도침범사고
- (10) 개문발차사고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 (12)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사고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③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다만, 위 '1.보상하는 손해의 (3)'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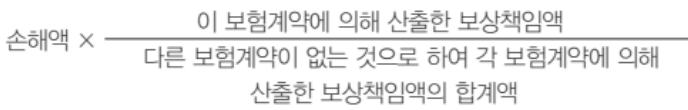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1)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2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시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

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③ 법원의 판결문 사본
 -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 (1)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 0)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 ②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공소제기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 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③ 법원의 판결문 사본
 - ④ 변호사보수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를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1)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3.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1. 위 '실제손해액' 이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간접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위 '(1)'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4) 다만, 보험계약자가 개인으로서,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등급	1급내지 3급	4급내지 6급
인정금액	500만원	200만원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3. 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3) 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만18세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8세이하의 자녀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8세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1) 성장판 회복 지원금

자녀의 성장판이 손상을 입은 경우 성장판 회복 치료비용으로 100만원을, 호르몬제 주사 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골절 길스 회복 지원금

자녀가 골절로 인해 길스 치료를 한 경우 위로금 10만원을 「골절 길스 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길스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 측면 또는 양 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3) 자녀 중증후유장애 위로금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함)가 남은 경우에 1인당 5천만원의 자녀 중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4) 스쿨존 내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대인배상Ⅰ」 또는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만18세이하 자녀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여 병실료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합니다.

(2) 한방치료비 지원금

피보험자의 자녀가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한방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방치료비 지원금 지급기준 〉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3급	300만원
4급~5급	200만원
6급~7급	100만원
8급~9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만18세이하의 자녀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8세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3항에서 규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1인실 또는 2인실 병실(특실제외)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5) 유산위험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임신 중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음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산위험 사고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유산위험 상해 사고 〉

상해등급	상해내용
1급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급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급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4급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급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6급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급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8급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급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 상해등급 및 상해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중 여성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6) 여성중대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화상 위로금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상을 입어 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피부손상을 입어 근피판술, 유리피판술, 식피술 등의 시술을 요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화상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신기준 피부손상율과 얼굴포함 피부손상율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화상 위로금 중 높은 금액 하나만을 지급합니다.

〈 화상 위로금 지급기준 〉

구 분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전신기준	4.5% 이하	4.5%초과 9%이하	9.0%초과 18%이하	18.0%초과 50%이하	50.0% 초과
얼굴포함		4.5%이하	4.5%초과 9%이하	9.0%초과 18%이하	18.0% 초과
화상 위로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주)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가장 높은 피부 손상율(전신기준 50%초과 또는 얼굴포함 18%초과)을 적용합니다.

(2) 성형 위로금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입어 성형치료를 한 경우 중증상해의 경우 5백만원을 일반상해의 경우 1백만원을 「성형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화상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성형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상해란 다음의 상해를 말합니다.

- 두부 :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손상
- 안면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 100원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 경부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 사람의 눈에 띠는 정도 이상
- 코 :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
- 귀 : 귓바퀴 연골부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

(2)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상해란 다음의 상해를 말합니다.

- 두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계란크기 이상의 두개골 결손
- 안면부 : 10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
- 경부 :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 사람의 눈에 띠는 정도 이상
- 코 : 코 연골부의 일부 또는 비익(鼻翼, 콧망울)을 결손한 경우
- 귀 : 귓바퀴 연골부의 일부가 결손된 경우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중 여성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7) 출퇴근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 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 중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 사고로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출퇴근 교통비 지원

출퇴근 시간 중의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출퇴근 사고 교통비로 하루 2만원을 30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부손해 포함)는 10일을 한도로 하며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복 비용 지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회복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사고에 따른 정신적 위로를 위한 리프레쉬 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퇴원 후 몸매관리 비용으로 30만원을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출퇴근 시간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06시부터 09시까지와 18시부터 21시까지를 말합니다.

단,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3) 수리차량 운반 서비스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우수 정비업체(당사 홈페이지 게시)에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맞긴 경우 정비업체는 20km의 범위내에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수리차량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다만, 20km를 초과하는 경우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및 가해자불명사고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이하 같음) 생긴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 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지정운전자의 경우는 「1~5)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③ 지정운전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이고,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이하 같음)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동차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기능범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지정운전자의 경우는 「1-5)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③ 지정운전자

5.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비용」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

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를 위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3)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가입한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을 보상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 비용은 대체교통비용 인정기준액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대체교통비용 인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1만원, 2만원, 3만원인 경우 : 각각의 1일 보험금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
 - 가)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차량의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전액
 - 나)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여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차량의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상당액
 - 다)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3만원

(3)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자동차의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한도
- ③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라 함은 보험회사와 대여자동차 전문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동급의 차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대여자동차 자기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5-6)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5-6)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의 '3. 보험금의 지급 (2)의 ② 보험 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에 의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대여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 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을 한도로 대여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대여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하여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여자동차의 보험계약 또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외의 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4)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기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 용어 풀이 〉

- (1)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이라 함은 신차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한 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5)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출고당시 신차(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차량)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출고된 지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손해(간접손해 제외)가 보험가입금액(가입 당시 차량가액)의 70%이상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6)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②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6. 적용제한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 ·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7)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화물1종)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2.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라 함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 ③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 ④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6. 특별약관의 해지

보통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만을 보험기간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8) 도난 부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2.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포함)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6-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 등의 방법(간편결제방법으로 납입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으로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간편결제방법 : 핀테크 기반의 전자지급 결제서비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 등의 방법(간편결제방법으로 납입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2) 행복나눔 할인 특별약관 II

6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가 아닐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30세 이상

②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1대)

③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④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④'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1대)

②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③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2. 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조건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1. 가입조건 (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 ⑤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⑥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⑦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1. 가입조건 (3)'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 ⑤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⑥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⑧ 다만,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2년마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⑨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4) '1. 가입조건 (4)'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 ⑤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⑥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⑦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균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3)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 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 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인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증명서류의 제출

- (1)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 (1)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4. 전환 취소

- (1)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3)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5. 준용규정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7. 기타 특별약관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 특정용도자동차, 적재정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길이 6m 미만인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라 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

여 제공합니다.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등 현장조치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력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 할 수 있으며, 현장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비상급유 서비스를 2회 초과 요청시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잔여 이용 가능 횟수를 한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급유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입하여 배달하여 드리며, 이 경우 연료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LPG(엘피지)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일부 차량의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동 약관 '(1) 긴급견인서비스 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배터리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5) 타이어교체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훨(wheel)을 개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훨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훨 개조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1)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③ 외제차 또는 3,0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④ 세이프티로더 등 별도의 구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⑤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 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7) 타이어 평크수리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평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평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평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평크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또는 '(5)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평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나.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평크와 같이 평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 다. 자연마모로 인한 평크,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 라.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 평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대행하여 드리며, 검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9) 폐차대행서비스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폐차전문 대행 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위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4) 배터리충전서비스, (5) 타이어교체서비스, (6) 긴급구난서비스,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9) 폐차대행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 건		전계약 긴급출동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7회
		1회	6회
		2회이상	5회
	전계약이 없는 경우	-	5회
보험기간 3개월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개월이하		-	2회

- (주) 1. 전계약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이 보험계약 직전에 당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전계약이 있고 보험기간 1년인 경우의 이용가능횟수는 전계약의 Readycar 긴급출동 서비스 사용횟수에 의하여 산정되며 전계약 미사용횟수와 무관합니다.
3.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9)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비상급유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위 이용가능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7. 특약보험료의 환급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배터리충전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③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및 배터리충전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4)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2)'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3)'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2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2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2)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1)'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3)'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4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⑥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3)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1)'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2)'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2종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5톤 초과의 3종화물자동차, 2종승합자동차, 길이 6m이상의 3종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이라 함)를 제공합니다.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급유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부족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 한하여 5리터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5리터 초과시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여 5리터 초과시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LPG(엘피지)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충전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② 단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일부 차량의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2. 보상하는 손해 (2) 배터리충전서비스,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 건		전계약 긴급출동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7회
		1회	6회
		2회이상	5회
	전계약이 없는 경우	-	5회
	보험기간 3개월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개월이하	-	2회

(주)1. 전계약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이 보험계약 직전에 당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전계약이 있고 보험기간 1년인 경우의 이용가능 횟수는 전계약의 Readycar 긴급출동 서비스 사용횟수에 의하여 산정되며 전계약 미사용횟수와 무관합니다.
3.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1) 비상급유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위 이용가능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7. 특약보험료의 환급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기입한 경우에 한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 가능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라 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등 현장조치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력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 할 수 있으며, 현장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잠금장치해제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동 약관 ‘(1) 긴급견인서비스 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타이어교체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훨(wheel)을 개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훨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훨 개조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1)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긴급구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③ 외제차 또는 3,0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④ 세이프티로더 등 별도의 구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⑤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 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5) 타이어 평크수리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평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평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평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평크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 또는 ‘(3)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평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나.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평크와 같이 평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 다. 자연마모로 인한 평크,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

어진 경우

라.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 평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대행하여 드리며, 검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7) 폐차대행서비스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폐차전문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위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2) 잠금장치해제서비스, (3) 타이어교체서비스, (4) 긴급구난서비스, (6) 정기검사대행서비스, (7) 폐차대행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건		전계약 긴급출동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7회	
		1회	6회	
		2회이상	5회	
전계약이 없는 경우		—	5회	
보험기간 3개월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개월이하		—	2회	

(주) 1. 전계약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이 보험계약 직전에 당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전계약이 있고 보험기간 1년인 경우의 이용가능횟수는 전계약의 Readycar(전기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전계약이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가입계약인 경우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사용횟수에 의하여 산정되며 전계약 미사용횟

수와 무관합니다.

3.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6) 정기검사대행서비스, (7) 폐차대행서비스'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특약보험료의 환급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2)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2·3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일반승용, 장애인 택시로서 구급용 또는 일반유상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 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 다. 차량 연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9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호,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해당 담보 및 해당 특약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시험용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상용화 등을 위해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6)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에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위 '(1)'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아래 '(3)'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 (4) 위 '(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1)'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1)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②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④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그 밖에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2) 위 '(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7) 블랙박스 장치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 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계약의 취소', '5.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② 보험회사가 블랙박스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 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2.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 '(1)'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1) 보험회사는 '1. 적용대상 (2)'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8)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차량 출고시 피보험자동차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승용·다인승 차종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 와는 무관하게 주행하는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등, 경고음, 진동 등 으로 차선 이탈을 인지하도록 경고하는 장치를 말하며, 해당 경고장치를 기반으로 하여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원래의 주행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 유지 보조장치(LKAS 등)를 포함합니다. 다만, 탈부착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장치 등에 탑재되어 있는 차선이탈 경고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KAS : 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①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차량모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 ② 자동차 제조업체의 선택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부속품명, 부속품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초 구매당시 계약서류 등)
 - ③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2)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1)' 및 '(2)'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경고등, 경고음, 진동 등을 운전자 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당시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대하여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3)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9) 주행거리 연동 할인 |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기간 동안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나)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 (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의 인위적인 변경이나 다른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45일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매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화질불량이나 흔들림 없이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상 총누적주행거리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2) 사진의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와 함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

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보험기간 해지일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을 교체(수리)할 경우에는 교체(수리) 이전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수리) 전 계기판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하며, 계기판을 교체(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수리) 후 주행거리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주행거리 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7)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및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확인받은) 경우 및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여 송부한(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2)', '(4)' 및 '(5)'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확인받아야) 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료의 정산 등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특약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내지 '(2)'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 하여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 정산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 거리정보가 송부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 또는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4) 이 특별약관 '2.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의무' '(1)'에서 규정한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내지 '(2)'에서 규정한 정보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3.의 '(1)'에서 규정한 확인 기일을 초과하여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 받아 이 특별약관의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5)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2)', '(3)'에 의하여 이 특별 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text{연간주행거리} = \frac{\text{일평균주행거리}}{\text{주행거리}} \times 365 \quad (\text{윤년일 경우 } 366)$$

- (1) 일평균주행거리
 $= (\text{최종 누계 주행거리} - \text{최초 누계 주행거리}) \div \text{경과일수}$
- (2) 경과일수 : 최초 누계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누계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일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3,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 5,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 1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0,000Km초과 ~ 12,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 17,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 2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20,000Km초과	0%

7-10)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하 '대인사고'라 함)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이하 '대물사고'라 함) 그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동작되어 발생한 사고
- (2)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 · 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3)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모드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차 동차 스스로 운행 중인 상태를 말하며,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전석에 탑승중인 사람을 운전자 및 운전 중인 것으로 봅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 이외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단, '2. 보상하는 손해'의 (2)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상합니다.
- (3)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며, 피보험자는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준용규정

-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및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 또는 「대인배상Ⅱ」를 이 특별약관의 대인사고,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의 대물사고로 대체하여 보통약관 규정을 적용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